

#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고등학생 저녁시간 및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

배한진\* · 진미정\*\*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패턴 및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인 2009년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인 2014년의 전반적인 저녁시간 사용패턴을 살펴보고, 이종차이분석을 활용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야간자율학습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관련 없이 2009년과 2014년 사이 모든 지역에서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이 줄고 일, 교제 및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에서 미제정지역에 비해 야간학습시간이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학원수강시간과 학교 외에서의 자율학습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제 및 여가시간의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둘째, 이종차이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과 미제정지역 간 야간자율학습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경우에는 미제정지역에 비해 야간자율학습시간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야간자율학습시간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목적과는 달리 감소된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여가시간으로 활용된 증거가 미미하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고등학생, 생활시간조사, 야간자율학습, 저녁시간, 학생인권조례

\* 서울대학교 이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및 교신저자, hanjinnim@snu.ac.kr

\*\* 서울대학교 이동가족학과 교수,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 I. 서 론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다. 대다수의 청소년은 평일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므로 시간 사용 패턴이 유사하다. 학교 일과가 끝난 후에는 시간 사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은 학교 정책에 따라 시간 사용 방식이 결정된다. 정규수업이 종료된 후 방과 후 학습이나 야간자율 학습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저녁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정규교과과정외 학습에 대한 결정은 학교 및 거주 지역의 교육 정책에 따라 다르다.

201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명칭과 내용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학생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교육에 관한 권리에는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교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학습 외의 학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지역에서 제정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아니지만 인천광역시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역시 0교시 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시간 이전 이후에 운영하는 학습의 강요를 금지한다. 이러한 조례 내용들은 고등학생들이 정규수업 외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 사용, 특히 저녁시간 사용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의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 보호 뿐 아니라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강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권현범, 김남순, 2013; 전창완, 2012),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준영, 2008). 또한 야간자율학습의 강요는 시간 사용을 제약하여 여가시간 및 수면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이 청소년의 건강과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도, 자아존중

감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차동혁, 옥선화, 2014; Caldwell, 2005; Sacker & Cable, 2006)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건강위해행동 등 부정적 영향(이정진, 강정희, 이선경, 채규영, 2013)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도입된 지 약 7년이 지났고 이후로 지역마다 유사한 조례가 도입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실제 정규학습 이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감소하였는지, 만약 감소하였다면 대신 어떤 활동들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시간 사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녁시간대에 초점을 맞춘 시간 사용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등학생의 시간 사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활동별 시간 사용량에 대해 연구하였다(김기현, 이경상, 2006; 김외숙, 박은정, 2012; 오만석, 2010; 우정원, 장수한, 2009).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에 대한 연구(백병부, 황여정, 2011; 허은경, 이재덕, 2014)에서도 야간자율학습을 분리하여 살펴보지는 않았다. 생활시간 자료의 구조상 특정한 시간대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는 전체적인 시간량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학교 정규수업이 종료된 이후의 시간만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야간자율학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야 하고, 이것이 특정한 제도적 변화에 의해 발생한 변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지역과 미제정지역을 비교하여야 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전국 지역을 고루 반영하여 대표성 있는 표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자료 중 시간대 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의 시간 사용을 분석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례 도입 전인 2009년과 도입 이후인 2014년 사이에 시간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기효과와 지역 차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이중차이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고등학생의 야간자율학습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 도입 전후의 고등학생 시간 사용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의

도한 성과를 성취했는지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실증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고등학생의 교육과 건강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생인권조례 도입 전과 도입 후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전 차이를 통제한 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 간 고등학생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은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 보장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년 1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3년 7월 전라북도(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순으로 연이어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된 학생인권 및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학생 개인 또는 사회운동단체에서 제기되었다. 1995년 최우주 학생의 야간강제 자율학습에 대한 소송 제기, 1998년 광주지역 중심의 중고등학교학생복지회의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문제제기가 2001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 2004년 사립학교 종교 자유의 문제 등의 사건을 통해 학생 인권 전반에 관한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학생인권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강명숙, 2012).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다양한 학생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의 항목으로 학생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각 시도에 따라 각 조항의 명칭과 세부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기타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4)이 전국 5,845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여부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체벌과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더 낮았으며, 학교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는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방식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제9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제10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제9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제6조는 학생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가 이를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할 경우 학생이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2011년 10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도 학교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자율학습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강제성을 띠고 있던 야간자율학습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해당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은 해당 고등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지만 통상 오후 6시~7시부터 오후 9시~10시까지 운영되며 경우에 따라 심야자율학습이 별도로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실제 강제야간학습이 폐지되었다면, 학생들의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 사용 양상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을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에서는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에 강제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6개 시도 중 서울이 16위(23.3%), 경기도가 14위(39.8%), 전북이 10위(46.7%)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의 경기도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경기도교육청, 2011; 김형완, 박근덕, 김태우, 2013; 김형완, 안금옥, 임태훈, 조진우, 2013)에서는 학교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견이 인문계 고교 기준 2011년 54.2%, 2012년 62.2%, 2013년 54.7%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지역 일반계 고교 2학년의 야간 학습 실태 조사 결과(이일권, 2011)에서는 학교에서 야간 학습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9%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에 비해 미제정지역에서의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 시기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이 줄어든 것 인지를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희진과 강창희(2015)는 야간자율학습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만을 다루고 있어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조례시행 이후에 관측된 조례 도입지역과 미도입 지역 간의 차이는 조례의 영향뿐만 아니라 조례 도입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차이분석을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의 차이를 분석에 포함해 인과효과 추정치의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광주, 전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바람직한 행동 경향이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중하위권학생들이 왕따, 폭행, 놀림/조롱 등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벌을 금지하는 관대한 교육방법의 시행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 제어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생인권조례 도입 전후 시간 사용 방식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의 도입 효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존재하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2. 야간자율학습과 고등학생의 시간 사용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과 이로 인해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 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참여는 고등학생의 학습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질적 연구를 통해 야간자율학습의 의미를 살펴본 권현범과 김남순(2013)의 연구에서 야간자율학습은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긍정적 기능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제성으로 인해 야간자율학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학습 공간과 개인의 학습 방식이 제약되기도 하였다. 부산 지역 일반계 고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창완(2012)의 연구에서도 야간자율학습 참여는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참여의 강제성을 인식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청소년 심야학습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준영(2008)의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주관적 만족감이 더 낮으며, 가출충동과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야간자율학습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생활시간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적 참여는 청소년의 시간 사용을 제약한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하나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 시간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에 시간을 많이 사용할수록 여가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2009년 생활시간조사와 미국의 2009년 ATUS(American Time Us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고등학생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 사용을 비교한 김외숙과 박은정(2012)의 연구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은 12시간 6분으로 미국 고등학생의 6시간 26분에 비해 거의 2배가량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여가시간의 경우 한국 고등학생은 평일 2시간 12분으로 나타나 미국 고등학생(5시간 42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시간의 경우 한국은 8분, 미국은 47분으로 6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으며(Caldwell, 2005),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차동혁, 옥선화, 2014). 또한 청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등 여가활동 참여가 15년 후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시기의 여가활동이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acker & Cable, 2006)는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여가시간의 감소는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이다.

수면시간의 측면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결과(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이 2015년 6시간 5분, 2016년 5시간 58분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고등학생의 73.5%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수면 부족의 이유(1, 2, 3순위 합산)로는 가정학습(55.6%), 학원/과외(51.0%), 야간자율학습(48.4%) 등이 각각 1, 2, 4위로 나타나 학생들이 주로 학습으로 인한 수면부족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6). 전국 중·고등학생 75,64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진, 강정희, 이선경과 채규영(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8시간 이상-9.5시간 미만의 적정 야간수면시간(National Sleep Foundation, 2000)을 가지는 청소년이 전체의 9.7%에 불과하였으며,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청소년은 43.5%,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을 가지는 청소년은 46.2%로 나타나 대다수의 청소년이 수면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시간의 부족을 경험하는 집단이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자살에 대한 생각, 음주 흡연 등 건강위해행동 등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수면시간 부족이 고등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의 저녁시간 사용을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 제언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야간자율학습시간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외에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야간자율학습시간만 따로 본 선행연구는 없지만 청소년의 일반적 학습시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학생의 성별과 학년, 부모의 학력, 소득, 거주지역 등이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PISA의 경제사회문화지위(ESCS) 지수를 사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가족의 부라는 가정배경이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상수(2014)의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보충학습시간이나 심화학습

시간, 자율학습시간, 사교육시간 등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가지고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민자와 손문금(2007)의 연구에서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정규수업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이 길고,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백병부와 황여정(2011)은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시간의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학기 중 학교학습 및 개인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은 부모학력, 가계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대신 부모의 지지와 같은 가정 내 사회자본과 학생 개인의 교육포부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력과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학기 중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도 존재하였는데, 대체로 여학생들이 학습시간의 초기수준과 학년에 따른 증가 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자율학습시간에도 이상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도 학생의 연령,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5년 간격으로 시행되는데, 2009년에 실시된 제3차 조사와 2014년에 실시된 제4차 조사는 2010년 이후 제정된 학생 인권조례 및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2009년 조사의 경우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약 8,100가구의 20,263명의 시간일지를 수집하였으며, 2014년 조사의 경우 7월과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약 12,000가구의 26,988명의 시간일지를 수집하였다. 이 중 2014년 7월의 경우 방학 기간이므로 학기 중과는 저녁시간 사용양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의 시간일지를 기록하도록 하며, 일지에는 10분 간격으로 수행한 행동과 이 행동을 함께 한 사람, 장소가 기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만 15-18세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평일 시간대 자료를 이용하고, 18시부터 24시까지의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360분간의 행동을 변수화 하였다. 시간일지를 각각의 사례로 사용할 경우 동일인이 작성한 이틀간의 일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STATA의 `vce(cluster)`<sup>1)</sup> 옵션을 활용하여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한부모가정과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는 사례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긴 아르바이트 시간과 짧은 여가시간 등 시간 사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는 2009년 963개 시간일지, 2014년 799개 시간일지가 사용되었다.

## 2. 변수 구성

고등학생의 저녁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코드를 이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 행동코드의 대분류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돌봄, 참여 및 봉사, 교제 및 여가, 이동, 기타의 9가지 행동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행동의 경우 ‘학교활동’과 ‘학교활동의 학습’ 두 가지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활동은 ‘학교수업(보충수업 포함)’, ‘학교에서의 스스로 학습(자율학습)’, ‘기타(휴식, 학교 행사 참여, 기타 학습관련 행사)’의 세 가지 소분류로 나뉜다. 학교활동의 학습은 ‘정규수업 외 수강(학원 수강 등)’,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방송, 인터넷 수강, 자율학습)’, ‘학교 외에서의 기타 학습 행동’으로 나뉜다.

종속변수인 야간자율학습 시간은 ‘학습’ 행동의 하위 행동 중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행동을 활용하였으며, 18시 이후 해당 행동이 나타난 횟수를 모두 더한 뒤 10을 곱하여 분 단위의 변수로 생성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정책 도입 전과 후를 나타내는

1) `vce(cluster)` 옵션은 각 사례가 집단 간에는 독립적이지만 집단 내에서는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집단 내 상관관계를 허용해주는 표준 오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으로, 반복 측정된 개인의 관측 자료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을 적용하였을 때 표준 오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추정 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기더미변수와 정책의 대상 여부를 나타내는 조례제정여부 변수, 정책 도입으로 인한 집단간 변화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더미변수와 조례제정여부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다. 먼저 시기더미변수는 2009년의 시간일지를 0, 2014년의 시간일지를 1로 코딩하였다. 조례제정여부 변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 광주, 경기, 전북과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조례’가 제정된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처치 집단으로, 그 외 시도의 경우 비교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1과 0으로 코딩하였다.

통제변수에는 고등학생 자녀의 만 연령, 성별, 부모의 만 연령, 학력,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이 포함되었다.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의 만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되었으며, 성별의 경우 남성은 0, 여성은 1로 코딩하였다. 부모의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을 기준으로 전문대 졸 집단, 대졸 이상 집단을 1로 더미 코딩 하였으며, 모 취업여부의 경우 미취업은 0, 취업은 1로 코딩하였다.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집단과 500만원 이상 집단을 더미 코딩 하였다. 조사연도간 월평균소득의 비교를 위해 2009년의 가구소득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11.8%, 통계청 e-국가지표)을 곱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분석의 주요 틀이 되는 연도와 조례제정지역 여부에 따라 비교해볼 때, 고등학생의 연령, 성별,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등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 빈도(비율))

변수	2009		2014		
	미제정지역 (N=555)	제정지역 (N=408)	미제정지역 (N=466)	제정지역 (N=333)	
고등학생 연령	16.28 (0.04)	16.15 (0.04)	16.35 (0.05)	16.48 (0.05)	
부 연령	46.91 (0.18)	46.71 (0.18)	47.61 (0.17)	47.90 (0.22)	
모 연령	43.60 (0.16)	43.82 (0.17)	44.60 (0.15)	44.53 (0.19)	
성별	남성	291 (52.4)	197 (48.3)	267 (57.3)	175 (52.6)
	여성	264 (47.6)	211 (51.7)	199 (42.7)	158 (47.4)

변수		2009		2014	
		미제정지역 (N=555)	제정지역 (N=408)	미제정지역 (N=466)	제정지역 (N=333)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	318 (57.3)	201 (49.3)	240 (51.5)	149 (44.7)
	전문대 졸	79 (14.2)	57 (14.0)	72 (15.5)	62 (18.6)
	대졸 이상	158 (28.5)	150 (36.8)	154 (33.0)	122 (36.6)
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412 (74.2)	294 (72.1)	280 (60.1)	191 (57.4)
	전문대 졸	47 ( 8.5)	48 (11.8)	97 (20.8)	52 (15.6)
	대졸 이상	96 (17.3)	66 (16.2)	89 (19.1)	90 (27.0)
모 취업여부	비취업	196 (35.3)	138 (33.8)	119 (25.5)	107 (32.1)
	취업	359 (64.7)	270 (66.2)	347 (74.5)	226 (67.9)
가구 소득	0-300만원 미만	168 (30.3)	111 (27.2)	82 (17.6)	47 (14.1)
	300-500 만원 미만	244 (44.0)	114 (35.3)	202 (43.3)	146 (43.8)
	500만원 이상	143 (25.8)	153 (37.5)	182 (39.1)	140 (42.0)

### 3. 분석 방법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양상이 변화하였는지, 야간자율 학습시간이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이중차이분석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조례제정지역과 미제정지역 각각에 대해 2009년과 2014년 시간 사용량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여 5년이 지난 뒤 저녁시간 사용양상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특히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이중차이모델을 적용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조례제정지역에서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은 정책 개입 효과 분석을 위한 일종의 준실험 모형으로, 정책개입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책 개입 전 차이를 제하는 방식을 통해 순수한 정책효과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1 \text{Treat} + \beta_2 \text{Period} + \beta_3 \text{Treat} \times \text{Period} + \beta X_i + \mu_i$$

여기서 Period는 조례 제정 전후를 나타내는 시기더미변수이고, Treat는 조례제정지역 여부를 나타내는 정책더미변수이며  $X_i$ 는 개인·가구특성 변수들로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녀의 연령, 성별을 통제하였다. 처치집단인 조례 제정지역과 비교지역인 조례미제정지역의 정책개입 전 시점의 차이는  $\beta_1$ 이며, 정책개입 후 시점의 차이는  $\beta_1 + \beta_3$ 이다. 정책개입으로 인한 순수한 정책효과는 정책개입집단의 정책개입 후의 두 지역 간의 차이에서 정책개입 전의 두 지역 간의 차이를 뺀 값인  $\beta_3$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례제정지역 여부 변수와 시기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mu_i$ 는 오차항이다.

조사당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종속변수인 야간자율학습 시간의 값이 0이 된다. 그러나 0의 값은 하루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 일지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Foster & Kalenkoski, 2013),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0에서 좌측 중도절단(left-censoring)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도절단이 다수 발생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적용할 경우 회귀계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는 토빗(T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토빗 모형은 비선형 모형이므로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같이 변수의 계수가 해당 변수의 한계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수의 한계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stata의 mfx compute 명령어를 활용하였다(민인식, 최필선, 2015).

## IV. 연구 결과

### 1. 시도별 평균 야간자율학습시간

표 2는 시도별 야간자율학습시간의 평균을 보여준다. 제도 도입 전인 2009년 야간 자율학습시간은 미제정지역 평균 93.08분, 제정지역 평균 74.53분이다. 제도 도입 후인 2014년 야간자율학습 평균시간은 미제정지역 평균 74.57분, 제정지역 49.19분이다. 2009년과 2014년 사이 야간자율학습시간은 조례제정지역에서 하루 평균 25.34분, 미제정지역에서 평균 18.51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약 73분), 강원(약 62분), 경기(약 54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서울은 2009년 평균 36.83분, 2014년 평균 39.49분으로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2009년 평균 야간자율학습시간도 다른 지역보다 20~70분 정도 적어서 다른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교육기관이 발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특성<sup>2)</sup>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다른 지역과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야간자율학습 시간의 변화를 평가할 때 서울을 포함한 분석결과와 서울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조례제정 지역의 사전 평균을 산출하면 약 91.38분으로 미제정지역의 93.08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의 2014년 야간자율학습 평균시간은 49.19분으로 2009년과 2014년 사이 평균 39.18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의 야간자율학습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나머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에서는 미제정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야간자율학습시간 감소를 보였다.

2) 서울지역의 사교육시간(정규수업외 수강)은 2009년 평균 55.16분, 2014년 평균 46.58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의 사교육 평균시간이 2009년 29.9분, 2014년 33.1분, 조례미제정지역의 평균시간이 2009년 29분, 2014년 25분으로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표 2  
**시도별 야간자율학습시간의 평균**

(단위: 분)

시/도	2009		2014		차이*	
	사례수	시간(표준편차)	사례수	시간(표준편차)		
조례 미제정 지역	부산	77	56.88 ( 7.78)	64	44.38 ( 6.99)	-12.50
	대구	69	83.33 ( 9.25)	64	72.50 (10.19)	-10.83
	대전	53	131.70 (11.49)	67	94.48 (10.22)	-37.22
	울산	71	97.18 ( 9.13)	47	106.60 (10.24)	+ 9.42
	강원	30	102.00 (15.04)	32	39.38 (10.99)	-62.62
	충북	43	75.35 (11.96)	30	58.00 (12.75)	-17.35
	충남	44	86.14 (11.93)	23	73.04 (16.22)	-13.10
	전남	49	101.63 (11.38)	36	83.61 (13.38)	-18.02
	경북	34	130.00 (13.62)	27	56.67 (16.34)	-73.33
	경남	52	105.19 (11.77)	55	101.27 (11.74)	- 3.92
	제주	33	81.52 (15.01)	21	54.29 (15.61)	-27.23
평균	555	93.08 ( 3.44)	466	74.57 ( 3.64)	-18.51	
조례 제정 지역	서울	126	36.83 ( 6.77)	79	39.49 ( 8.49)	+ 2.66
	인천	39	77.44 (12.13)	73	58.36 (10.28)	-19.08
	광주	73	114.11 ( 7.61)	58	86.38 (10.08)	-27.73
	경기	136	92.65 ( 7.06)	80	38.63 ( 7.84)	-54.02
	전북	34	53.53 (12.81)	43	20.93 ( 7.75)	-32.60
	평균	408	74.53 ( 4.03)	333	49.19 ( 4.22)	-25.34
	평균**	282	91.38 ( 4.65)	254	52.20 ( 4.86)	-39.18

\* 차이는 2014년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에서 2009년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뺀 값

\*\*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의 평균 시간

## 2.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 변화

야간자율학습 시간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평일 저녁시간 사용 양상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였다. 전체 저녁시간 사용은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돌봄, 참여 및 봉사, 교제 및 여가, 이동,

기타 활동의 평균시간 및 그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학습 시간은 다시 세부 유형별로 평균값과 그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조례 제정 후 제정지역 여부에 따른 전체 저녁시간 사용의 변화

표 3은 고등학생의 전체 저녁시간 사용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조례제정지역과 미제정지역 모두 학습시간은 감소하고 일과 교제 및 여가 활동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조례제정지역에서 학습시간이 더 크게 감소하고 일과 교제 및 여가시간은 소폭 더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례 미제정지역에서 학습시간은 약 25분 감소(171.2분→146.2분)하였고 일 시간은 약 3분(0.8분→3.4분),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약 18분 증가(61.1분→79.5분)하였다. 조례제정지역에서 학습시간은 약 34분 감소(169.1분→135.2분)하였고 일 시간은 약 5분(1.9분→7.0분), 교제 및 여가시간은 약 22분 증가(61.7분→84.1분)하였다. 조례제정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할 경우 학습시간은 약 32분 감소(165.5분→132.8분)하였고 일 시간은 약 6분(2.6분→8.6분), 교제 및 여가시간은 약 20분 증가(62.8분→82.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시간 사용은 지역에 따른 차이와 시기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의 경우 조례미제정지역과 제정지역 모두에서 약 2.4분 증가하였고 가정관리시간은 약 1.2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돌봄 시간과 참여 및 봉사 시간의 경우 2009년과 2014년 양 지역 모두에서 사용시간이 미미하였다. 조례미제정지역에서 이동시간은 약 3분 감소하고 기타시간은 약 5분가량 증가하였으나, 조례제정지역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례제정 후 제정지역 여부에 따른 고등학생의 전체 저녁시간 사용의 변화 양상

(단위: 분(표준편차))

분류	미제정지역			조례제정지역			조례제정지역(서울 제외)		
	2009년	2014년	t-test	2009년	2014년	t-test	2009년	2014년	t-test
개인유지	81.46 (1.75)	83.45 (1.84)	-0.78	75.44 (2.14)	79.43 (2.72)	-1.17	76.95 (2.66)	81.22 (3.24)	-1.03
일	0.83 (0.61)	3.41 (1.18)	-2.04*	1.91 (0.96)	7.03 (2.46)	-2.08*	2.59 (1.37)	8.58 (3.15)	-1.80
학습	171.17 (3.54)	146.24 (4.13)	4.61***	169.12 (4.10)	135.23 (5.32)	5.13***	165.5 (5.2)	132.83 (5.96)	4.15***
가정관리	3.59 (0.56)	4.10 (0.62)	-0.61	2.87 (0.48)	4.14 (0.71)	-1.52	3.01 (0.64)	4.33 (0.85)	-1.25
돌봄	0.18 (0.09)	0.11 (0.11)	0.53	0.34 (0.23)	0.06 (0.06)	1.07	0.00 (0.00)	0.00 (0.00)	1.20
참여 및 봉사	0.00 (0.00)	0.00 (0.00)	0.00	0.02 (0.02)	0.33 (0.33)	-1.02	0.04 (0.04)	0.43 (0.43)	-0.96
교제 및 여가	61.12 (2.67)	79.48 (3.42)	-4.29***	61.74 (2.83)	84.08 (4.32)	-4.46***	62.8 (3.46)	82.44 (4.82)	-3.36***
이동	34.79 (1.01)	31.74 (1.07)	2.08*	36.59 (1.51)	37.66 (1.57)	-0.49	38.72 (1.93)	39.21 (1.83)	-0.18
기타	6.86 (0.45)	11.46 (0.6)	-6.26***	11.96 (0.57)	12.04 (0.68)	-0.09	9.96 (0.64)	10.94 (0.75)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 2) 조례제정 후 학습 시간의 변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과 2014년 사이 전반적으로 학습시간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에서는 학교활동시간이 미제정지역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으며 학교활동 외 학습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례 미제정지역에서는 학교활동이 약 22분 감소(108.2분→86분)하였고, 학교활동외 학습은 약 3분 감소(63분→60.3분)하였다. 조례제정지역에서는 학교활동이 약 30분 감소(90.1분→60.1분)하였으며, 학교활동외 학습은 약 4분 감소(79분→75.2분)하였다. 조례제정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하였을 경우 학교활동은 약 42분 감소(108.2분→66.2분)하였으며 학교활동외 학습은 약 9분 증가(57.3분→66.7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유형별로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학교수업(보충수업)의 경우 2009년 조례 미제정지역에서는 9.59분,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에서는 9.65분이며 서울을 포함한 조례제정지역에서는 10.25분으로 나타나 서울 포함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의 경우 2009년 조례 미제정지역과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에서는 각각 평균 93분과 91분으로 유사한 시간을 보이나, 서울을 포함할 경우 조례제정지역의 평균시간이 74분으로 줄어든다. 학원수강시간과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의 경우에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2009년 조례 미제정지역에서 학원수강 시간은 평균 29분,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시간은 평균 31분으로 나타나며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에서는 학원수강시간이 평균 30분, 스스로 학습시간은 평균 25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할 경우 학원수강시간은 평균 37.7분으로 서울을 제외하는 경우에 비해 약 8분가량 증가하며, 학교 외에서의 자율학습은 평균 38.7분으로 약 13분가량 증가한다. 즉, 2009년 조례제정지역과 조례미제정지역 간의 학습 유형별 사용시간의 차이는 서울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며, 서울을 제외할 경우 조례제정지역과 조례미제정지역의 학습시간 사용은 유사하다.

학습유형 별 2009년과 2014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수업(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양 지역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폭은 조례제정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수강과 학교 외 자율학습의 경우 조례 미제정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조례제정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조례제정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수강과

학교 외 자율학습의 경우 조례 미제정지역에서 학교 수업이 약 3분 감소(8.6분→5.1분)하고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약 19분 감소(93.1분→74.6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학원 수강시간은 약 4분 감소(29.4분→25분)하고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은 약 3분 증가(31.7분→34.3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례제정지역의 경우 서울을 포함할 시에는 학교 수업은 약 6분(10.3분→4.2분), 야간자율학습은 약 24분 감소(74.5분→49.2분)하였으며, 학원수강시간(37.8분→36.1분)과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시간(38.7분→38.3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울을 제외할 경우 학교수업은 약 4분(9.7분→5.5분), 야간자율학습은 약 39분 감소(91.4분→52.2분)하며, 학원수강시간은 평균 3분(29.9분→33.1분), 학교 외에서 스스로 학습시간은 평균 8분(25.4분→33.4분)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분석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 분석결과는 앞서 여가시간의 변화량이 학생인권조례제정지역과 미제정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일부 제공할 수 있다. 2009년과 2014년 사이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약 20분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대신 여가시간이 증가했다기보다는 학원수강시간과 학교 외 자율학습(인터넷 강의 수강 포함)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과 2014년의 평균 시간을 비교한 결과 학교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시간 모두 지역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감소한 정도는 조례제정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이래로 정규교육과정 외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과 자율학습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학습시간의 감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효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중차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4

조례제정 후 제정지역 여부에 따른 학습시간의 변화

(단위: 분(표준편차))

분류	미제정지역			조례제정지역			조례제정지역(서울 제외)		
	2009년	2014년	t-test	2009년	2014년	t-test	2009년	2014년	t-test
학교활동	108.22(3.68)	85.99(3.91)	4.13***	90.12(4.46)	60.06(4.60)	4.66***	108.16(4.46)	66.18(4.60)	5.67***
학교수업	8.59(1.09)	5.13(0.82)	2.47*	10.25(1.60)	4.20(1.01)	3.04**	9.65(1.60)	5.51(1.01)	1.98*
자율학습	93.08(3.44)	74.57(3.64)	3.69**	74.53(4.03)	49.19(4.22)	4.32***	91.38(4.03)	52.20(4.22)	5.82***
기타정규학습	6.54(0.66)	6.29(0.71)	0.26	5.34(0.73)	6.67(1.39)	-0.89	7.13(0.73)	8.46(1.39)	-0.66
학교활동 외 학습	62.95(3.01)	60.26(3.04)	0.60	79.00(4.06)	75.17(4.83)	0.61	57.34(4.06)	66.65(4.83)	-1.44
학원수강	29.42(2.35)	25.02(2.35)	1.31	37.70(3.22)	36.28(3.47)	0.30	29.89(3.22)	33.07(3.47)	-0.62
학교 외 자율학습	31.73(2.02)	34.31(2.62)	-0.79	38.70(2.79)	38.32(3.37)	0.08	25.35(2.79)	33.35(3.37)	-1.90
기타 학교 외 학습	1.80(0.24)	0.92(0.26)	2.48*	2.60(0.36)	0.57(0.22)	4.57***	2.09(0.36)	0.24(0.22)	4.67**
전체학습	171.17(3.54)	146.24(4.13)	4.61***	169.12(4.1)	135.23(5.32)	5.13**	165.5(4.1)	132.83(5.32)	4.15***

\*  $p < 0.05$  \*\*  $p < 0.01$  \*\*\*  $p < 0.001$

### 3.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표 5는 학생인권조례가 야간학습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이중차이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조례제정여부와 시기(연도)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조례제정으로 인한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서울을 포함한 모델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와 연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조례제정여부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 광주, 경기, 전북을 처치 집단으로 하여 분석을 실행하였을 경우 시기변수와 조례제정여부와 시기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양 지역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감소하였지만 조례제정 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선형 모형에서는 선형 모형과는 달리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Karaca-Mandic, Norton & Dowd, 2012; Puhani, 2012),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시기별 야간자율학습의 예측치를 계산하면 정책의 순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sup>1)</sup>. 분석결과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시간의 예측치를 계산하면 2009년 미제정지역의 야간자율학습시간은 약 88.50분, 2014년 미제정지역은 약 68.80분, 2009년 조례제정지역의 야간자율학습시간은 약 87.00분, 2014년 조례제정지역은 약 42.24분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를 이중차이분석으로 나타내면 조례미제정지역과 제정지역의 2009년 야간자율학습 시간차이는 약 1.50분, 2014년의 시간 차이는 약 26.54분이며 두 값의 차는 25.04분이다. 즉 이 값이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인해 줄어든 야간자율학습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 야간자율학습 시간의 감소는 전체적인 자율학습시간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개별 시간량은 동일한 채 야간자율학습을 수행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야간자율학습 시간 대신 야간자율학습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분석과 LPM을 적용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즉 서울을 제외한 조례제정지역에서 추가적인 야간자율학습 참여

1) STATA의 margins 명령어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rgins, atmeans predict (ystar(0,)) over(정책더미변수 기간더미변수)의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한계효과 계산 시 다른 통제변수들은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확률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지면 관계상 표는 생략함).

표 5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토빗분석)

변수	서울 포함		서울 제외	
	Coef.(S.E.)	dy/dx(S.E.)	Coef.(S.E.)	dy/dx(S.E.)
학생 연령	-2.53 ( 5.08)	-1.45 ( 2.92)	-2.61 ( 5.02)	-1.61 ( 3.08)
학생 성별 (0=남성)	-0.43 ( 9.09)	-0.25 ( 5.23)	-5.3 ( 8.95)	-3.25 ( 5.50)
부 연령	0.50 ( 1.68)	0.29 ( 0.97)	1.15 ( 1.66)	0.71 ( 1.02)
모 연령	-2.01 ( 1.82)	-1.16 ( 1.05)	-2.49 ( 1.79)	-1.53 ( 1.10)
부 학력 (0=고졸이하)				
전문대졸	18.63 (13.27)	11.06 ( 8.12)	14.99 (13.09)	9.44 ( 8.45)
대졸이상	13.54 (12.93)	7.90 ( 7.63)	10.2 (12.6)	6.33 ( 7.90)
모 학력 (0=고졸이하)				
전문대졸	16.74 (14.77)	9.93 ( 9.00)	22.14 (14.53)	14.14 ( 9.60)
대졸이상	0.48 (14.22)	0.28 ( 8.20)	0.66 (13.81)	0.40 ( 8.51)
모 취업여부	1.34 ( 9.83)	0.77 ( 5.65)	-5.27 ( 9.79)	-3.26 ( 6.08)
소득 (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38 (11.74)	3.10 ( 6.79)	1.32 (11.54)	0.81 ( 7.10)
500만원이상	8.58 (13.48)	4.98 ( 7.88)	12.9 (13.2)	8.02 ( 8.30)
조례제정여부	-37.91 (12.02)**	-21.19 ( 6.60)**	-3.01(11.86)	-1.85 ( 7.26)
시기 (0=2009)	-34.40 (11.64)**	-19.67 ( 6.60)**	-34.04(11.24) **	-20.80 ( 6.81)**
조례제정여부 ×시기	-25.55 (19.62)	-14.09 (10.33)	-48.22(19.92) *	-27.31 (10.26)**
상수항	150.50(89.99)		153.71(87.65)	
Log likelihood	-6370.92		-5942.88	
사례수	1762		1557	

\* $p < 0.05$  \*\* $p < 0.01$  \*\*\* $p < 0.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방식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변화한 것인지를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2009년과 2014년 사이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이 줄고 일, 교제 및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시간 사용의 증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오후 10시-11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시·도 조례의 제정 등 과도한 학습시간을 제한하고 학생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시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이 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야간자율학습시간의 감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것인지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에서 서울 지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에서 조례제정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 지역을 제외할 경우에는 조례제정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이 미제정지역에 비해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하루 25분(일주일에 2시간 5분)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인권조례가 의도했던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던 야간자율학습이 개선되어 자율 학습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의 비효율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패턴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을 통해 추가적인 시간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이 고등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증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야간자율학습시간이 감소한 대신 학원수강시간과 학교 외

에서의 자율학습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여가활동 시간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인 분석을 한 결과 교제 및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이 미디어 활용과 게임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과 2014년 사이의 여가시간 증가 역시 게임시간의 증가분이 가장 많았다. 반면, 저녁시간동안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시간은 평균 10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비구조화된 활동을 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있다는 연구결과(Trainor, Delfabbro, Anderson & Winefield, 2010)들을 볼 때,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야간자율학습대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시간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청소년의 휴식권과 문화향유권 등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줄어든 야간자율학습시간이 다른 사교육시간으로 옮겨가지 않고 여가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야간자율학습시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의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명암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고등학생의 생활 및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의 인권 경험을 살펴본 권순정(20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체벌 감소, 두발자유화 등의 측면에서 표면적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통제방식이 체벌에서 벌점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학생에 대한 통제가 존재하며 시험과 입시제도에 의해 압박감을 느끼고 이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의 2016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42.1%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이 강요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야간자율학습의 강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연, 윤희정, 정우진, 이혜선, 2016).

본 연구에서는 조례제정지역과 조례미제정지역을 구분하여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를 밝혀냈으나,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조례제정지역인 서울의 경우 높은 사교육열로 인해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조례제정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으며 따라서 조례제정 이후 변화가 적었다. 강원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연합뉴스, 2015.09.09) 2009년 102분에서 2014년 39.38분으로 약 62분가량 줄어 큰 변화를 보였다. 이는 교육감의 성향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를 추진한 것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한겨레, 2010.07.08.)<sup>2)</sup>.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평균적으로 야간자율학습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0의 값이 다수 존재하는 시간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편의를 토빗 분석을 통해 교정하고 클러스터링을 통해 동일한 개인이 작성한 시간일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교정하였으나, 데이터로 인한 편이가 남아있을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학교를 단위로 표집하지 않았기에 2009년과 2014년에 표집된 학생들이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학교에 속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시행여부는 단위학교 학교장에 달려있으므로 이러한 자료의 특성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개인특성 측면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비율과 가구소득의 비율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여 이로 인해 이중차이분석의 결과가 편의를 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 동일 학교를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면 결과의 편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틀 치의 시간일지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 1일차 시간일지와 2일차 시간일지를 종합해야 하나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수면시간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수면시간 변화를 분석하는 것 역시 고등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으로 인한 고등학생의 시간 사용방식 변화를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실태조사자료가 조례제정이전의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전국 단위로 표집된 자료의 부재로 인한 분석의 어려움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후 야간자율학습시간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의 증가는 제한적이었던

2) 그러나 2009년과 2014년 당시 각 지역 교육감의 보수/진보적 성향을 변수로 투입하였을 때는 해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구체적 제도의 실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발생한 시간 사용의 변화가 고등학생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 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숙 (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5(2), 1-15.
- 경기도교육청 (2011).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2011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경기: 경기도교육청.
- 권순정 (2015).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 경험: 서울 S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8(3), 161-199.
- 권현범, 김남순 (2013).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인식 속에 내재된 야간 자율학습의 의미. **교육연구**, 21, 45-74.
- 김기현, 이경상 (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연구보고 06-R14).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총괄 보고서** (연구보고 15-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총괄 보고서** (연구보고 16-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외숙, 박은정 (201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19-132.
- 김형완, 박근덕, 김태우 (2013). **2013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 경기: 경기도교육청.
- 김형완, 안금옥, 임태훈, 조진우 (2013). **2012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 경기: 경기도교육청.
- 민인식, 최필선 (2015).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박민자, 손문금 (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 백병부, 황여정 (2011). 일반계 고등학생의 유형별 학습시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2(1), 57-85.
- 연합뉴스 (2015.9.9). 강원 학교인권조례 미상정...조례 제정 무산 위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9/0200000000AKR20150909162900062.html> 에서 2017년 2월 15일 인출.

- 오만석 (2010).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 299-330.
- 우정원, 장수환 (2009). 청소년 방과 후 시간활용 실태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의 관계.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6(1), 69-85.
- 이일권 (2011). **부산지역 일반계 고교 2학년의 야간 학습 실태 조사**.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 이정연, 윤희정, 정우진, 이해선 (2016).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 경기: 경기도교육청.
- 이정진, 강정희, 이선경, 채규영 (2013). 수면시간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1(3), 100-110.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상수 (2014). 가족배경과 학습시간, 성적: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한국청소년 연구**, 25(2), 291-318.
- 전창완 (2012). 학교 야간 학습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영역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의 일반계 고교 2 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1(1), 16-28.
- 정희진, 강창희 (2015).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38(3), 97-130.
- 차동혁, 옥선화 (2014).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1), 353-378.
- 최준영 (2008). 고등학생 보충야간자율학습과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가출 및 자살충동 간의 관계. **사회연구**, 16, 211-232.
- 한겨레 (2010.7.8.). “자율 높이면 학력 오를것...기다려 달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29579.html>에서 2017년 2월 15일 인출.
- 허은경, 이재덕 (2014). 고등학생의 학습유형별 참여 시간이 학업성취도 및 학업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 연구**, 32(4), 121-139.

- Caldwell, L. L. (2005). Leisure and health: why is leisure therapeutic?.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3(1), 7-26.
- Foster, G., & Kalenkoski, C. M. (2013). Tobit or OLS? An empirical evaluation under different diary window lengths. *Applied Economics*, 45(20), 2994-3010.
- Karaca-Mandic, P., Norton, E. C., & Dowd, B. (2012). Interaction terms in nonlinear models. *Health services research*, 47(1pt1), 255-274.
- National Sleep Foundation. (2000). *Adolescent sleep needs and patterns: Research report and resource guide*. Washington, DC: National Sleep Foundation.
- Puhani, P. A. (2012). The treatment effect, the cross difference, and the interaction term in nonlinear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Economics Letters*, 115(1), 85-87.
- Sacker, A., & Cable, N. (2006). Do adolescent leisure-time physical activities foster health and well-being in adulthood? Evidence from two British birth cohorts.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6(3), 331-335.
- Trainor, S., Delfabbro, P., Anderson, S., & Winefield, A. (201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33(1), 173-186.

## ABSTRACTS

### Changes in the use of evening time and compulsory evening study time among high school student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Bae, Hanjin\* · Chin, Meej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which bans compulsory evening study of schools, i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use of both evening time and compulsory evening study time among high school students. Using data from the 2009 and 2014 Korean Time Use Survey, we employed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amount of time used for study purposes decreased, while the amount of time used for work and leisure increased between 2009 and 2014. The compulsory evening study time in the regions with the ordinance in effect decreased more than that in the regions with no ordinance. However, the increase of leisure time in the regions under the ordinance was smal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rdin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ompulsory evening study. Future studies need to examine any possible associations between reduced study time and the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compulsory evening study time, evening time use, high school students,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time use survey

투고일: 2017. 2. 27, 심사일: 2017. 5. 2, 심사완료일: 2017. 5. 12

---

\* Seoul National University